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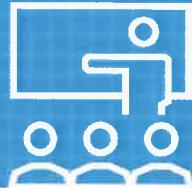
2019. 9. 1 개정판

학교자체해결제 시행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장

사안조사



일러두기 본 가이드북은 기존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p.32 이하 일부 개정판입니다.

2.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③ 학교의 장은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구성하며,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자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사안조사 책임자 및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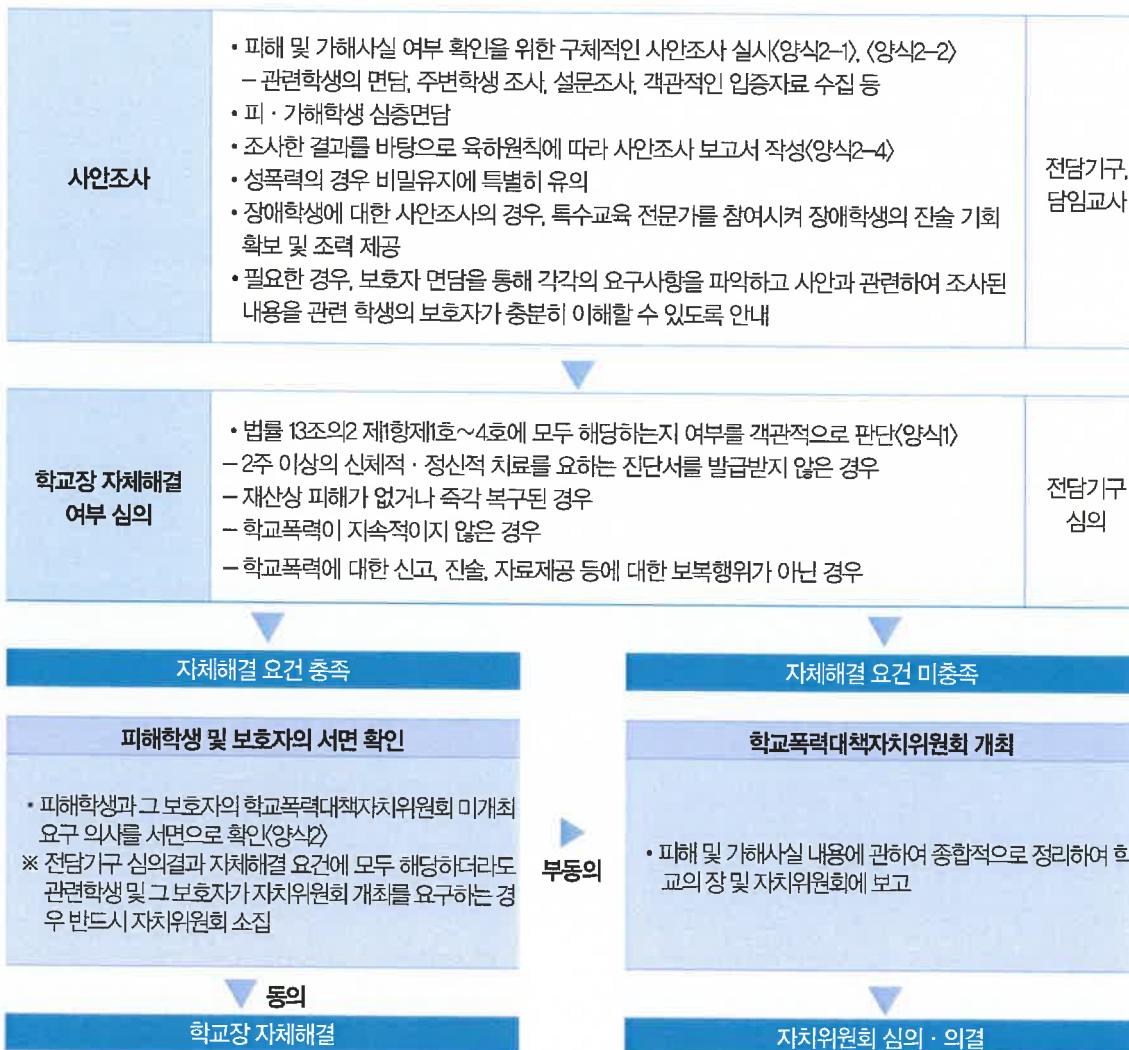
- 조사 책임자 : 학교장
- 조사 담당자 : 학교폭력 전담기구(법적 기구) 또는 소속 교원(법률 제14조 제3항)

단계별 조치사항

단계	처리내용	비고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부터의 통보 및 교사, 학생, 보호자 등의 신고 접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인지 	
신고 접수 및 학교 장·교육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접수된 사안을 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양식1-1)에 반드시 기록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지, 교육청(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에 보고(양식1-2) 	업무담당자
즉시조치 (필요시 긴급조치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 시 피해학생과 기해학생 즉시 격리. 기해학생이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학생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관련학생 안전조치(피해학생·보건실 응급처치·119신고·병의원 진료 등, 기해학생·격리·심리적 안정 등)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한 학생이 기해학생으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 피해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 우선 실시 성폭력인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성폭력 전문상담기관 및 병원을 지정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 치유 자치위원회 개최 이전에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 제16조 제4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긴급 조치 실시 가능(양식2-3) 	학교장, 담임교사 등

2

II 사안처리 절차



※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필요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참 고

학교폭력이 아닌 사안의 종결처리

-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안인 경우 종결처리
 - 제3자가 신고한 사안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오인신고였던 경우
 - 학교폭력 의심사안(담임교사 관찰로 인한 학교폭력 징후 발견 등)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었던 경우
- ※ 위의 경우에는 학생(학부모)이 자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법률 제13조제2항제3호에 의하면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 최하지 않을 시 법률 위반이 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음). 단, 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 정할 경우 '조치없음'으로 처리할 수 있음.



사안조사절차(예시)



참 고

사안조사 시 유의사항

- 서면 조사, 해당학생 및 목격자의 면담 조사, 사안 발생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종합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증거 자료를 확보한다.
- 면담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육하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확인서를 받는다.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안조사를 실시한다.
- 관련학생 간의 주장이 다를 경우, 목격 학생의 확인을 받거나 직·간접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안조사에 임 한다. 피해·기해 학생이 일관된 진술을 하는지, 증거자료와 진술 내용이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 전담기구 소속교사는 학생, 보호자, 목격자, 담임교사 등을 면담조사한 후에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장애학생에 대한 사안조사의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진술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학생(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 및 탈북학생의 사안조사 시, 통역의 활용 또는 관련 담당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한다.
- 성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대상자 신변보호, 2차 피해 방지 등에 특별히 유의한다.
- 관련학생의 소속 학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학교간 사안조사 내용 확인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한다.

● 사실 확인

- (확인서) 피해·기해학생 확인서, 목격학생 확인서(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 (설문조사) 피해학생 및 기해학생과 관련된 학생과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
- (증거 자료 수집) 이메일 채팅, 게시판, SNS, 피해사실 화면 온라인 상 캡쳐, 문자 메시지,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 음성증거자료 등
- (진단서 및 소견서) 폭력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진단서, 의사 소견서 등

참 고

사실 확인 시 진위 파악 원칙

- (면담결과와 관련 정보의 일치) 피해측과 기해측이 면담을 통해 확인한 것과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밝혀낸 결과들이 일치하는지를 파악한다.
- (기해·피해자의 상호 인정) 면담조사 결과를 피해학생(보호자)과 기해학생(보호자)이 상호 인정하는지 확인한다.
- (진술 맥락의 일관성 파악) 언급한 진술에서 문맥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잘 부합되는 살핀다.
- (목격자 확인) 면담조사 결과와 목격 학생의 확인이 일치하는지를 점검한다.
- (정황증거 파악) 사안의 주변 흔적이나 간접적인 정황이 있는지, 그러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의 진술과 더 잘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II 사안처리 절차

[면담 조사]

- 면담 과정에서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가해학생 및 보호자, 목격자 등에게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도록 한다.
 -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전문가에게 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 학생들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해당학생의 눈맞춤, 눈빛, 손 떨림, 목소리 크기 및 높낮이 등을 통해 학생의 불안, 분노, 우울 등을 파악한다.
 - 위급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을 통해 심리검사 또는 정서적 지원을 받도록 한다.
 - 초등학생의 경우, 서면조사에 무엇을 써야 할지 알지 못해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기재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주도록 한다.
 - 장애학생의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면담조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하도록 한다.
 - 중도입국·외국인학생과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경우, 가급적 대면 면담을 활용하고, 서면조사 활용 시 한국어로 충분한 내용을 기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번역된 조사지의 활용 및 모국어 작성 허용할 수 있다.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조사지는 번역하여 활용한다.
- ※ 면담조사시 면담자가 녹취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면담 시 전문가 활용

-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교육지원청 소속 Wee 센터의 상담사, 특수교육 전문가 및 전문상담 순회교사 지원 요청
- 학교폭력SOS지원단(1588-912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등의 상담전문가 지원 요청
- 초기 위기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및 학교 인근 신경정신과 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상담소 등 전문가 활용(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인력 파악, 업무지원 협조 협약 체결 등)
- 시·도교육청 등에 다문화학생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상담사가 상주하는 경우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면담 시 활용

[정보 수집]

- (피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피해학생 수, 교우관계, 장애 유무, 평소 학교생활, 특이사항 등
- (가해학생) 학년, 성별, 인적 사항, 가해학생 수, 가해 동기, 장애유무, 다른 피해자 및 유사 사안의 관련 유무 등
- (폭력 유형 및 형태) 폭력유형(신체폭행, 금품갈취, 따돌림 등), 폭력형태(집단폭력, 일대일 폭력 등), 발생 및 지속기간(1회적·지속적 사안), 발생장소, 발생원인, 치료비, 피해 정도, 진단서 발급 유무 등

[정황 파악]

- 피해학생의 심리적·신체적 현재 상태 파악 : 대처능력, 적응능력 등을 파악한다.
- 피해학생(보호자 포함)의 현재까지의 대처상황을 확인한다.
- 가해학생(보호자 포함)의 대응방법 및 태도를 파악한다.
- (힘의 불균형 파악) 관련 학생들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힘의 불균형은 물리적인 체격·체력은 물론, 언어·표정·심리적 표현 및 인간관계에 의해 유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괴롭힘의 대상이 된 아이가 교실에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느낀다면, 특히 그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집단폭행 사안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2장 | 사안조사 |

● 요구사항 확인

- 학생과 보호자의 사안 해결에 대한 요구를 파악한다.
- 피해·기해 상황에 대한 수용 정도 및 사과, 처벌, 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 재발 방지 요구(설문조사) 등을 확인한다.

● 면담일지 및 보고서 작성

- (면담일지 작성) 관련학생, 보호자, 담임교사와의 면담 내용을 면담일지에 기록한다(교무수첩 등 활용 가능).
- (보고서 작성)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안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한다.
- (진위 여부의 판단 및 확정) 가해자가 기해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목격자가 증언을 거부하여도 다른 여타 상황에서 사실로 파악이 가능하면 확인된 사실로서 사안조사서에 기록할 수 있다.
- (양측 주장 모두 기록) 사안조사 내용 중 피·기해학생의 첨예한 의견 대립 중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록할 수도 있다.

참 고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개 유의사항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면담일지나 보고서는 직접적인 정보 공개 대상은 아니다. 다만, 사안관련 민원이나 쟁송 발생 시 학교 및 교사의 사안처리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 및 결과를 면담일지에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안 보고

- 작성된 보고서를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에 보고한다.

사안조사 중점파악요소

● 폭력 행위의 유형별 중점 파악 요소

폭력 유형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 빈도, 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유형 검토

● 폭력 행위의 경증 판단 요소

폭력 행위의 경증 판단 요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7조 제2항〉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인지 여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의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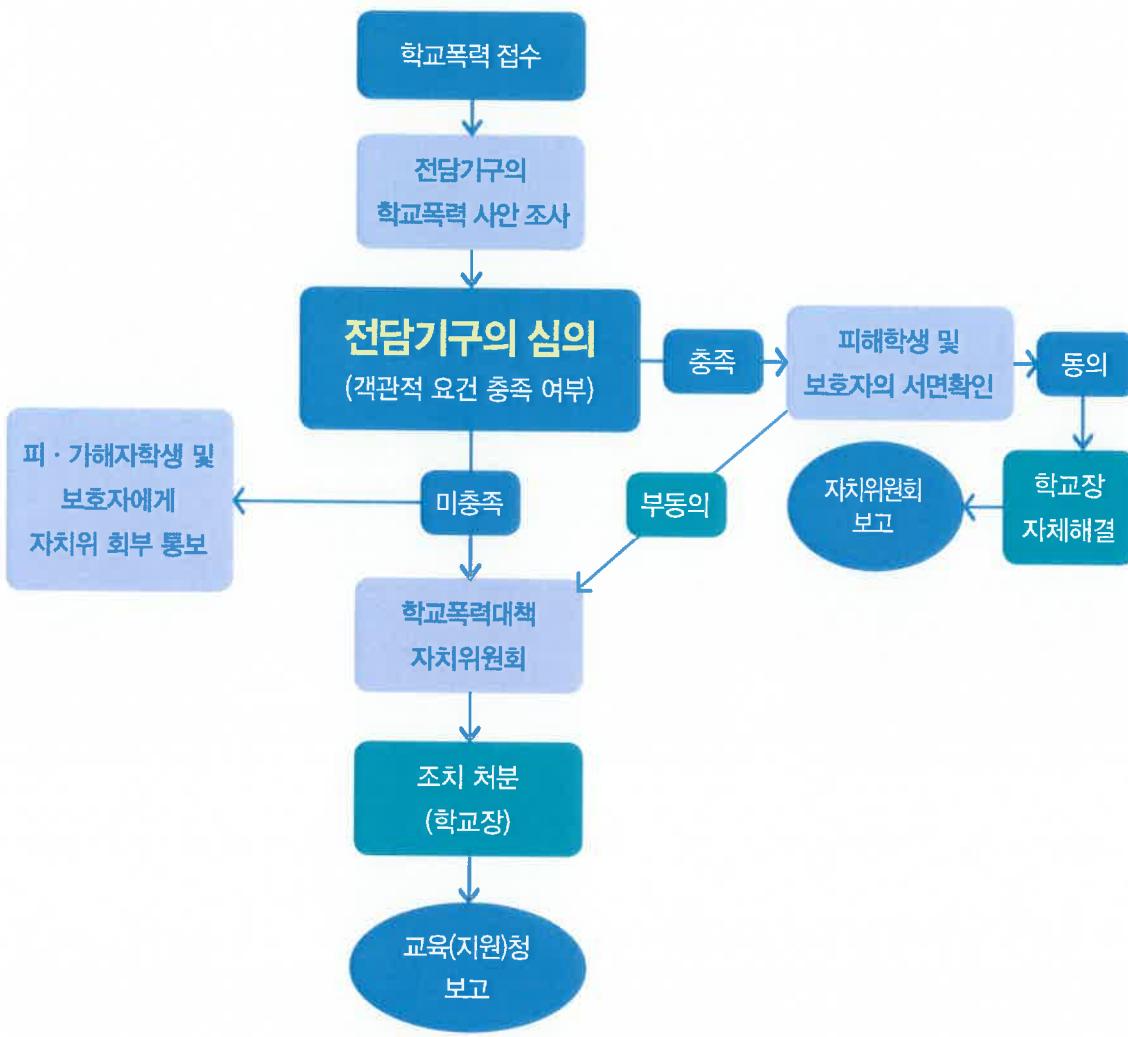
〈기타〉

- 교사(敎唆)행위를 했는지 여부
-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을 행사한 것인지 여부
-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 폭력행위를 주도했는지 여부
- 폭력서사를 통해 있는지 여부
- 정신적·신체적으로 심각한 장애를 유발했는지 여부



3.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 층에서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관련조항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 ① 제13조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자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증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 ③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률 제13조의2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2020. 2. 29. 까지는 자치위원회로 본다.'

학교장 자체해결 사안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아래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가능

※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변복하여 진단서를 회수하는 것은 불가함.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재산상 피해의 복구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지속성의 여부는 피해 관련학생의 진술이 없을지라도 전담기구 위원이 보편적 기준을 통해 판단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가해 관련 학생이 조치 받은 사안 또는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신고, 진술, 증언, 자료 제공 등을 한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보복행위로 판단할 수 있음.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 전담기구의 사안 조사 과정에서 피해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를 상담할 때 학교장 자체해결을 강요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전담기구 심의 시 유의사항
 -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 해당 여부는 전담기구 심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하나의 학교폭력 사안에서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 경우, 가해학생 모두가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다.

※ 2020년 3월 1일부터는 학부모(전담기구 구성원의 1/3)를 포함해서 전담기구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서면 확인
 -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의 경우 전담기구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 기준에 대해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에 확인하면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다.
- 학교장 자체해결 내부결재
 - 전담기구의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전담기구 심의 결과 보고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서를 첨부한다.
- 자치위원회 보고(정기회의 때 가능)
- 관련학생 보호자 통보 (서면, 유선, 문자 등 가능)
- 필요시, 관련 학생 간 관계개선 의지와 동의 여부에 따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전담기구는 신고 접수 등 사건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전담기구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

※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구 심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7일 이내에서 자치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참 고

학교폭력 관련 학생의 소속학교가 다른 경우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한 경우)** 학교자체해결 여부의 판단은 피해학생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심의 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확인을 받는다. 이 때 정확한 사안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해학생 학교에서 조사한 사안 내용이 공유 될 수 있도록 학교장 승인하에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한다.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명확하지 않거나 쌍방인 경우)** 양쪽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사실과 기해 사실을 조사하고 전 담기구에서 심의한다. 양 기관 모두 학교장 자체해결로 판정이 날 경우 학교장이 자체해결하며, 어느 한 곳의 학교에서라도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공동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할 수 있다.